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착오로 주식인수인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함(안 8.라.(1) 신설)
- 법원행정처에 공시 제한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8.라.(2) 신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부를 가림(안 8.라.(3) 신설)

3.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나.(2)(바)를 삭제하고, 8.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

(1) 종류주식의 내용란, 기타사항란, 전환사채란 등(이하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착오로 주식인수인, 주주, 채권자 등(이하 “주식인수인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 주식인수인 등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는 관할 등기소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소장(등기국·과장, 사무과장을 포함)은 위 (1)의 경우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할 사항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직권으로 법원행정처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 (2)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를 전부 가리고(예 : * * * * * * - * * * * * *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8.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p> <p>가. (생 략)</p> <p>나. 등기사항증명서 작성 및 열람 방법</p> <p>(1) (생 략)</p> <p>(2) 예외</p> <p style="padding-left: 20px;"><u>(바) 등기부의 “기타사항란“</u></p> <p style="padding-left: 40px;"><u>에 등기되어 있는</u></p> <p style="padding-left: 40px;"><u>사항</u></p> <p>(사) (생 략)</p> <p>(3) (생 략)</p> <p>다. (생 략)</p> <p><u><신 설></u></p>	<p>8.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u><삭 제></u></p> <p>(사)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u>라.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u></p> <p>(1) <u>종류주식의 내용란, 기타사항란, 전환사채란 등(이하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u> <u>착오로 주식인수인, 주주, 채권자 등(이하 “주식인수인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u> <u>주식인수인 등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는</u> <u>관할등기소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u></p> <p>(2) <u>등기소장(등기국·과장, 사무과장을 포함)은 위 (1)의 경</u></p>

우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
할 사항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직권으로 법원행정
처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 (2)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기
록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를 전부 가리고(예 : *
* * * * * - * * * * * *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
게 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78